

의안번호	제649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회)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호경 의원 등 22인
발의연월일	2024년 8월 16일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김호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9
------------	-----

발의 연월일 : 2024. 8. 16.

발의자 : 김호경,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노금식, 박용규,  
김꽃임, 박지현, 이정범,  
안지윤, 임병운, 이의영,  
이종갑, 이옥규, 박경숙,  
이상정, 이상식, 김현문,  
유재목,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 1. 제안이유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위로금 지급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마. 위로금의 결정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위로금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위로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와 협의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71-7에 소재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이하 “하소동 화재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사망자를 말한다.
2. “위로금”이란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제비 등과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위자료 등을 제외한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로금의 지급대상) ①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위로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위로금수령권자”라 한다)는 희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위로금심의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4조(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하소

동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안전실장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변호사
4. 제천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

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로금의 결정) 위로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위로금의 통지)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위로금을 결정한 때에는 자체 없이 위로금 수령권자에게 결정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로금의 청구) 위로금 수령권자가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로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위로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로금 수령권자가 해외거주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수령권자가 지급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위로금을 과오 지급하였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위로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

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관계법령

###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 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사 유

- 위 조례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 따라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조례안 제4조(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르면 위로금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이 제7조(위원회의 회의)에 의거 재적과반수 출석 및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을 도지사가 결정(제9조, 위로금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함